

충청북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1994. 9
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
설 사 보 고 서

1994. 9. 9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4년 8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1994년 8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4. 9. 9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보사환경국장 최경주)

가. 제안이유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('93. 7. 31)

됨에 따라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○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정함.

· 충청북도지사는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

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 (안 제2조)

· 충청북도민은 재활용품 우선구매, 1회용품 사용자제,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의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도지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에 협력 (안 제3조)

- 도지사는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·군수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, 시행토록 함. (안 제4조)
- 도지사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해 권고·계도하고 제조자 등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. (안 제5조)
- 도지사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·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, 보상금을 지급 (안 제7조)
- 도지사는 대형폐기물 등의 집하, 보관장소 설치운영 (안 제11조)
- 도지사는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시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명령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당해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음. (안 제13조)
- 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는 별표1의 과태료 부과 (안 제17조)

3. 검토 의견

(전문위원 김영만)

'93. 7. 31자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

-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,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,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시설 설치 등 도지사의 책무와
- 재활용품 우선구매, 1회용품 사용자제,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
- 도지사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와 조치명령, 장려금 등의 지급, 공유재산의 대부, 대형폐기물 등의 집하·보관장소 설치 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으며,

- 제조자 등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토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력 향상은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타시도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상품이 본도에서 유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
- 시·군별로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·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업이 쓰레기분리사업처럼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 수거해 놓은것을 쓰레기장에 버릴때는 마구잡이로 버리듯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없음"

5. 토론 요지 : "없음"

6. 심사결과 : "원안가결"

7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: 조례안 1부